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040
----------	-------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일부를 해당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을 조정하고,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과세에 따른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조세 혜택 부여의 정책적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 조정(안 제27조제1항제1호)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이 ‘100분의 15’인 점을 고려하여, 특정외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등을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을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1000분의 175) 이하'에서 '100분의 15 미만'으로 조정함.

나.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에 관한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4항·제5항 신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자국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한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7항 신설)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중 해당 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라.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

료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제80조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추가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제외한다) 및 내국추가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④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글로벌최저한세 제도와 유사한 조세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는 등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면제 요건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모기업이 자국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와 유사한 조세 제

도를 말한다)를 시행하는 등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면제 요건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하여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중 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구성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주요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외신탁재산”을 “해외신탁재산(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한다)”으로,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 (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 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 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 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 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 당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 ----- ----- ----- ----- ----- ----- -----.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 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 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 액 이하일 것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 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실 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미 만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 의 70퍼센트			
2. (생 략) ② ~ ④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적용면제) ① ~ ③ (생 략)	제80조(적용면제) ① ~ ③ (현행 과 같음)		
<신 설>	④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		

<신 설>

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유사한 조세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는 등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면제 요건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모기업이 자국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와 유사한 조세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는 등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면제 요건의 세부 내용과 그 밖

<신 설>

<신 설>

④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하여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중 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구성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 추가
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기
추가세액가산액은 제외한다) 및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자에게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내국추가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제외한다)-----

-----.
-----.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

----- 경우(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주요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해외신탁재산</u>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u>1억원을 한도로 한다</u>)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⑤ (생략)	<u>해외신탁재산(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한다)</u>----- -----<u>10억원</u>----- -----. ----- ----- ----- -----.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국세 수입 △432억원

(단위: 억원)

구 분 \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지출	소 계(A)	-	-	-	-	-	-	-
수입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 조정(§ 27)	△16	△104	△104	△104	△104	△432	△86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반영 (§ 80)		추	정	곤	란		
	○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 91)		추	정	곤	란		
	소 계(B)	△16	△104	△104	△104	△104	△432	△86
총 비용(A-B)		16	104	104	104	104	432	86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27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 조정)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 간주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요건을 실제발생소득의 15% 미만으로 함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금액이 감소하여 세수 감소
2	제80조 제4항부터 제8항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반영)	글로벌최저한세의 개편방안을 반영하여 병행체계 적용면제 및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한 적용면제를 도입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3	제91조제4항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 에서 ‘10억원’ 으로 상향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27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 조정)	여	-
2	제80조 제4항부터 제8항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반영)	부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분구조, 기업별 상세 재무정보 등 상세 정보가 필요 하나, 실제 신고 전에는 과세정보 확보에 제약
3	제91조제4항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	부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건수 등 관련 정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수효과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6.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 조정 (§27)
 - 세수감: △432억원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금액, 법인세 실효세율, 중간예납비율을 고려하여 추계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반영 (§80)
 - 세수감: 추정곤란
 -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분구조, 기업별 상세 재무정보 등 상세 정보가 필요하나, 실제 신고 전에는 과세정보 확보에 제약
-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 (§91)
 - 세수증: 추정곤란
 -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건수 등 관련 정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수효과 추정 불가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사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양서영	전동표	권기중	변광욱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동표	044-215-4651	jdongp@korea.k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5년간 432억원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16	104	104	104	104	432
○ 회계·기금 간 전입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 기타						
<합 계>	16	104	104	104	104	432

II. 부문별 재원조달 방안

○ 5년간 432억원 (일반회계 432억원)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 중앙정부	16	104	104	104	104	432
○ 일반회계	16	104	104	104	104	432
< 합 계 >	16	104	104	104	104	432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총비용 432억원은 종합부동산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 세법개정안 전체 국세수입 증가분 등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2027년 이후에도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Ⅳ.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6년 7~8월	기획예산처	세입예산안에 반영

Ⅵ. 작성자

- 성명

사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양서영	전동표	권기중	변광욱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동표	044-215-4651	jdongp@korea.kr